

「제21회 전자·IT의 날」 정부포상 연장 공고

글로벌 경기 변동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고 포상하여 지속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제21회 전자·IT의 날 정부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23일
산업통상부장관

제21회 「전자·IT의 날」 정부포상 추진 계획

2026. 2.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I 전자·IT의 날 개요

[1] 추진배경

- 전자산업의 발전과 역사를 기념하는 정부포상이며 전자·IT산업의 상징적 성과인 수출 1,000억불 달성('05년)을 배경으로 한국전자전 개막일*을 '전자·IT의 날'로 제정
 - '06년 제1회 '전자의 날'행사(기념식 개최 및 정부포상) 이후, 매년 정례화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노고를 격려
 - * ('05년) '전자의 날' 제정, ('06년) 제1회 '전자의 날' 개최, ('09년) '전자IT의 날'로 변경
- '59년 진공관 라디오를 국내 처음 생산한 이후 전자산업은 그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
 - '24년 국내 GDP의 약 12.4%, '25년 2,643억불의 수출을 달성하며 국가 경제의 중추적 역할
 - * 전자IT산업 수출액(억불) : ('87) 111 → ('99) 515 → ('05) 1,083 → ('18) 2,204 → ('25) 2,643
 - * 전자IT산업 수출Top3(억불) : ('22) 2,333(3위) → ('24) 2,350(2위) → ('25) 2,643(1위)

[2] 추진목적

- 글로벌 경기 변동과 공급망 재편 속에서도 전자·IT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함

< '26년 포상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 10. 13(화) 10:30 / 서울 코엑스
- 참석자(예정) : 정부·유관기관·산업계, 수상자 등 400여명
- 주요내용 : 유공자 포상, KES 개막행사, 오찬 리셉션 등

II 유공자 포상계획

[1] 포상규모

구 분	'23년	'24년	'25년	'26년(잠정)
산업훈장	2	2	2	2
산업포장	2	1	1	2
대통령표창	5	6	6	5
국무총리표창	5	5	5	5
장관표창	27	27	27	27
합 계	41	41	41	41

※ 2026년도 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예정

[2] 포상부문 및 자격요건

포상 부문	추천 부문	자격요건 (추천기준)	비고
산업훈장	경영자	○ 다년간 전자·IT기업을 경영하면서 전자·IT산업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로서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 - 기술개발, 수출증대, 수입대체, 고용창출, 노사화합 등에 공이 큰 자 - 종업원의 복지향상 및 기업윤리 측면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부문별 최소 수공기간 훈장 : 15년 포장 : 10년 표창 : 5년 추천기준일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산업포장	근로자	○ 전자·IT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자 - 신시장 개척, 신제품 개발, 품질관리, 원가 절감, 특허 획득 등 생산성 향상에 공이 큰 자 - 책임감과 협동심이 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 - 노사협조에 공이 큰 자	
표창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공로자	○ 전자·IT산업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실적이 있고 다음 각호에 공이 있는 자 - 산업정보, 인프라 구축, 시장개척, 생산성 향상, 정책 및 기획, 학술연구, 인력양성, 기술개발, 기업경영지원, 특허 대응 등에 공이 큰 자	

[3] 재포상 금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 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구 분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 장	7년	-	-	기간) 수여일~행안부에 추천일 (2026. 6. 30)
포 장	7년	-	-	
표 창	7년	5년	3년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4] 포상 제외 대상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별급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중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증빙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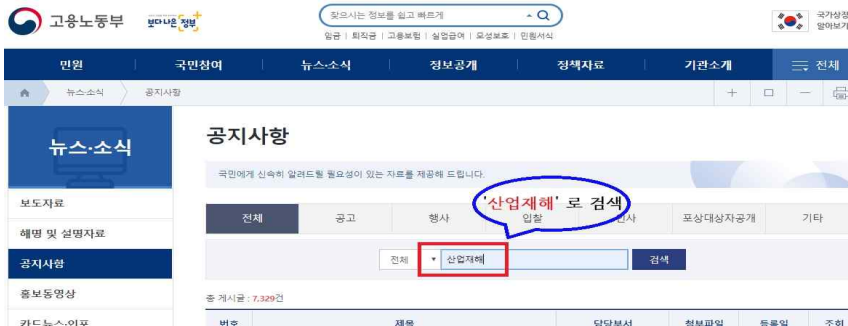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산업재해” 검색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② 공지사향에서 “산업재해” 검색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최근 3년간)

번호	제목	담당부서	첨부파일	등록일	조회
172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채용...	산재예방정책과		2019.02.28	67
171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서류전...	산재예방정책과		2019.02.22	411
170	[공고] 2019년도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접수 안내	산재예방정책과		2019.02.18	511
169	[공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 조사·연구위원 공개...	산재예방정책과		2019.02.13	379
① 168	[공고] 2018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총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8.12.28	1631
167	[포상대상자공고] 2018년 산업재해예방 유공자 명단	산재예방정책과		2018.06.29	2152
166	[포상대상자공고] 산업재해예방 유공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산재예방정책과		2018.05.02	2183
165	[공고] 2018년도 산업재해예방유공 포상 접수 안내	산재예방정책과		2018.02.22	1565
② 164	[공고] 2017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총 공표	산재예방정책과		2017.12.20	6347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의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자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장정보고사-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 (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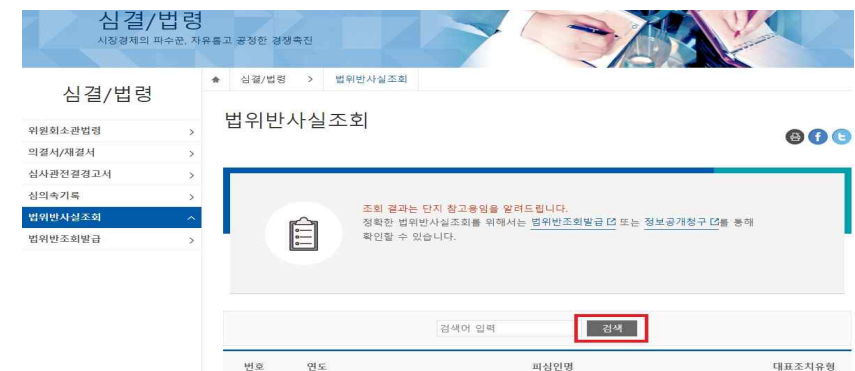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심결/법령 > 범위반사실 조회 : <http://www.ftc.go.kr/www/violationLawList.do?key=298>)를 통하여 확인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심결/법령 > 범위반사실조회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최근 3년간)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http://www.moel.go.kr/info/default/list.do>)를 통하여 확인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최근 3년간)

□ 기 타

○ 「정부포상 업무지침」과 「장관표창 업무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자는 추천을 제한함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상훈법」 제8조 제1항의 제1호(거짓공적), 제2호(국가안전에 관한 죄)의 사유에 의한 취소권 : 1년에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 「상훈법」 제8조 제1항의 제3호(범죄경력)의 사유에 의한 취소권 : 3년을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당해연도 1회 국무회의 상정 추진

○ 「상훈법」 제38조 제2항(벌칙)의 조항에 따라 서훈에 필요한 기록서류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또는 기재 입력한 정부포상 대상 및 담당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5) 포상대상자 선발 절차

- 전자.IT기업,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후보자 추천(5월)
- 산업통상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자 선정(8월)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포상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실시하고 최종 포상수상 대상자를 행정안전부로 추천(9월)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

[6] 제출서류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이력서 각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각 1부
- 해당 증빙자료 각 1부
- * 제출 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양식 파일의 안내 사항 참조

[7] 포상신청서 제출

- 접수기한 : 공고일로부터 **2026. 4. 30(목) 까지**
- 서식 다운로드 : KEA 홈페이지(www.gokea.org) 공지사항
-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회원서비스팀 이용석 대리**
 - * 신청서, 공적조서, 이력서는 전자파일(한글, 워드, PDF)로 이메일 제출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표창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보**
 - * (전화) 02-6388-6023 / (이메일) les@gokea.org

III 2025년 포상결과

□ 포상개요

- 일시/장소 : 2025. 10. 21.(화) / 코엑스 401호
- 참 석 자 : 산업통상부장관, KEA회장, 수상자(41명), 산·학·연 관계자 등 400여명 참석
- 포상규모 : 산업훈장(2명), 산업포장(1명), 대통령 표창(6명), 국무총리 표창(5명), 산업통상부장관표창(27명) 등 41점
- * 세부 수상자리스트 : KEA 홈페이지(www.gokea.org) 참조

□ 현장사진



행사장 참석자 전경



축사(산업통상부 문신학 차관)

환영사(KEA 용석우 회장)



수상자 기념사진(1)

수상자 기념사진(2)

※ 작성 안내사항 ※

제출 증빙자료	
기본정보	사업자등록증 * 유공자 포상 지원자(근로자, 경영자, 근로자)는 현재 소속된 기관(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등록증 제출
매출액 / 영업이익	재무제표 또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 공로분야(대학, 공공기관 등) 근로자가 지원시 제출하지 않음
수출액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무역통계진흥원, 금융권 확인 증명서 등) 또는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자료 * 공로분야(대학, 공공기관 등) 근로자가 지원시 제출하지 않음
종업원수	공시데이터 또는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www.4insure.or.kr) ※ 금액 등 민감정보는 가림처리 가능 * 공로분야(대학, 공공기관 등) 근로자가 지원시 제출하지 않음
수공기간	재직기관별 경력(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고용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
포상 실적	수상 표창장 스캔본(사진) 또는 상훈 홈페이지 캡처본 * 장관표창 이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해당
공적 조서 관련 증빙 자료	- 전자IT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 리스트(자유양식) 및 증빙자료 제출 - 대·내외, 기관, 정부포상, 상장 등 수상 실적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상장 스캔본, 사진 등) 제출 - 특허출원, 지재권 등의 실적이 있을 경우 증빙자료(특허증 사본, 특허번호 등) 제출
포상신청서_[붙임1]	소속된 기관의 직인(또는인감)을 날인하여 스캔본 제출 필요 * 날인이 없는 신청서의 경우 접수 불가 한글파일(또는 워드파일) 제출 필요
공적조서_[붙임2]	공적사항은 2,500자 이상 5,000자 이내(공백포함) 텍스트로만 작성 형태는 개조식/서술식 자유 작성, 도표 및 그림 삽입 불가 한글파일(또는 워드파일) 제출 필요
이력서_[붙임3]	한글파일(또는 워드파일) 제출 필요
포상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4~7]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 관련 동의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는 지원자 정보 기재 및 서명 후 스캔본만 제출

※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종업원 수, 수공기간 등 데이터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어야 하며, 증빙자료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관련문의 : KEA 회원서비스팀 이용석 대리(02-6388-6023, les@gokea.org)

< 붙임 1 >

전자·IT산업 발전 유공자 포상신청서

업체명	(한글) (영문)	대표자	(한글)		
주 소		설립일자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근로자()	홈페이지			
자본금	종업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산재보험가입번호		
억원	명				
주생산품목					
연 도	'24년	'25년	증감률(%)		
경영실적					
매출액(백만원)	-	-	-		
수출액(천불)	-	-	-		
영업이익(백만원)	-	-	-		
종업원수(명)	-	-	-		
유 공 자(칸이 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추천 순위	성 명	직 위	주민등록번호	전자업계 재직(수공)기간 (2026. 06. 30 기준)	과거 포상기록
1	(한글) (한자)		-	년 월	
2	(한글) (한자)		-	년 월	
3	(한글) (한자)		-	년 월	
전자·IT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 신청합니다. 2026. . . 신청업체 대표자 (인) 작성자 직 위 : 성 명 : 전 화 : 휴대폰 : 이메일 :					

(1)성명	(한글) ○ ○ ○	(한자) ○ ○ ○
(2)주민등록 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해당 없음
(4)국적	(외국인의 경우 기재)	
(5)주소	회사 주소	
(6)직업	(7)소속 (업체명)	
기업가, 회사원 등	(주) 앞뒤 확인	
(8)직위	(9)등급(직급.계급)	(10) 전자업계 재직기간 (수공기간)
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	00급	년 월 *포상신청일 기준 : 2026. 6. 30.
(11)공적요지 (65자 내외)		
* (26) 공적 사항을 요약하여 작성		
* 공적 요지 작성 시 글자수는 반드시 60자~70자 사이로 기재 * “위 사람은” 등의 표현은 지양하고, “~기여함” 의 형식으로 작성		
(12)추천훈격	(공란)	(13)추천순위 (공란)
조 사 자		
(14)소속	(15)직위	
(16)직급	(17)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6. . .		

주요 학력 및 경력 (최근 내용부터 위에서 아래로 작성)			
(18)년 월 일	(19) 이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2026-01-30~현재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년 월 일	(23)내 용	(24)년 월 일	(25)내 용
2026-01-30	산업부장관 표창	2026-01-25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26) 공 적 사 항
※ 작성시 유의사항 (6~9) 예시 글자 부분은 삭제 후 작성 (10) 수공기간은 행정안전부 포상 신청 예정일인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 (11) 공적요지는 (26)공적사항의 요약으로 반드시 65자 내외(60자~70자)로 작성 (18)~(21) 학력은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주요 경력 기재 (22)~(25) 과거 포상기록은 장관 이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 정부포상 수상 사실만 기재 (26) 공적사항에는 다음 항목을 순서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 가. 경영자의 경우 ①회사설립현황 ②회사규모 확대(매출, 종업원) ③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의 노력 및 성과 ④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외 수상실적 ⑤직원복지 ⑥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 등 기재 나. 근로자, 공로자의 경우 ①근무년수, 근무경력, 회사(기관)내에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여도 ②전자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대내외 수상실적, 특허 및 지재산권 실적 등 개인 공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연구개발, 정책사업 참여 실적 리스트 등) 첨부 ※ 반드시 2,500자 이상, 5,000자 이내 텍스트로만 작성 * 글자수가 위의 <u>기준과 다를 시 행안부 공적조사 관리시스템에 등록 불가</u> ※ 도표, 그림, 특수문자, 기호 등은 삽입 불가, 개조식/서술식으로 작성

(26) 공 적 사 항
(이하 백지사용)

< 붙임 3 >

※ 사진을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이 력 서			
	성 명	(한글)	연락처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현 근 무 처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비고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6.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산업통상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공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 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 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공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 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2. 산업통상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항목 : 성명(단체명, 한자),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등급(직급,계급), 근무기간, 공적요지, 주요 학력 및 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 과거포상
 - 민감정보 항목 : 징계, 형벌 (해당 시에 수집·이용)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

위와 같이 민감정보(해당 시)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 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3. (수집근거) 정부 표창 규정 제27조(대통령령 제31380호)
4.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명	(서명)
---------------------------------	-------------------------------------	----	------